



제 426회 국회(임시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미등록 이주아동 교육지원 등〉

■ 이학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103호)

2025. 6.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학영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4. 24.

다. 회 부 일 : 2025. 4.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이주 아동(18세 미만)의 권리를 규정한 「UN아동권리협약」을 1991년 비준함에 따라, 협약 이행 당사국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아동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는 등 교육과 관련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

그동안 등록 외국인 자녀의 입학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나,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에는 입학 등에 어려움이 있어 기본적인 교육조차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법 시행령에 미등록 이주아동의 입학 등을 위한 절차를 용이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고등학교의 입학 등은 교육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학습권의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교육에 취약한 문제가 있음.

이에 미등록 이주아동은 국민과 같은 수준의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습과정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미등록 이주아동이 초·중·고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외국인 아동 또는 학생의 범위에 미등록 이주아동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28조의2제1항제2호 후단 신설).
- 나. 미등록 이주아동이 국민과 같은 수준의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입학, 전학, 상급학교로의 진학 등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8조의2제2항 신설).
- 다. 다문화학생등이 다문화학생등이 아닌 학생과 학습과정, 복지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8조의2제3항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다문화학생등’의 범위에 미등록 이주아동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이들이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초·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안 제28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다문화학생등이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다문화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아동 또는 학생(이하 “다문화학생등”이라 한다)의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해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8조의2(다문화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 ①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면서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아동 또는 학생 <u><후단 신설></u>	2. ----- ----- -----학생. <u>이 경우 외국인 아동 또는 학생의 범위에 「출입국관리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사람으로서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아동 또는 학생(이하 “미등록 이주아동”이라 한다)을 포함한다.</u>

현행	개정안
<u><신설></u>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국민과 같은 수준의 초·중·고등교육 및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입학, 전학, 상급학교로의 진학 등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u><신설></u>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학생들이 다문화학생들이 아닌 학생과 학습과정(체험·참여 학습을 포함한다), 복지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④ ~ ⑦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미등록 이주아동’은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갖지 못한 채 국내에 체류하는 아동을 의미하고, 이들은 대체로 부모와 함께 국내에 입국하기 때문에 그 부모가 합법적 체류자격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함¹⁾.

미등록 이주아동과 관련해 정확한 통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무부의 출입국통계에 따르면 2023년 19세 이하 불법체류 외국인 수는 6,169명으로 파악되고²⁾, 2021년 8월말 기준 만 17세 이하 국내 체류 외국인 인구수 129,641명에서 불법체류율(20%)을 적용하면 약 2만 명 가량으로 추산되기도 함³⁾.

1) 이준일, 「미등록 이주 아동의 인권」, 『인권법평론 제28호』, 2022, 201p

2)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3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24,

한편, 우리나라는 1991년 「UN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였는바, 동 협약은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도록 하고, 이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음⁴⁾. 이에 따라 미등록 이주아동 또한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여받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⁵⁾에 따르면 외국인에 해당하는 미등록

3) 이준일, 「미등록 이주 아동의 인권」, 『인권법평론 제28호』, 2022, 206p

4) 「UN아동권리협약」

제2조 (비차별) ① 당사국은 아동이나 그 부모, 법정대리인³의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기타 의견, 민족적·인종적·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태생, 신분 등의 차별 없이 본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아동에게 이를 보장해야 한다.

제28조 (교육) ①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 받을 권리를 인정하며 기회균등에 근거하여 이 권리를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특별히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초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적이고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2. 일반 및 직업교육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 발전을 장려하고 모든 아동이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무상교육 도입 및 필요 시 재정적 지원 제공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가 개방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모든 아동이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침을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학교 출석률 및 중퇴율 감소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이하 이 조에서 “귀국학생등”이라 한다)의 보호자는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같음하여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귀국학생등의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

4.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5.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초등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귀국학생등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에 따른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같음하여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에 있는 중학교를 관할하는 교

이주아동은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중학교의 장에게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는데, 관계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류의 합법성 여부를 학교에 공개하지 않고 입학 또는 전학이 가능하도록 하여 미등록 이주아동의 입학 등을 위한 절차를 용이하게 규정한 측면이 있음.

그러나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미등록 이주아동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들의 권리 보장이 간접적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는 한계가 존재함. 특히 복지 서비스 이용 등 보다 적극적인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정책 운영의 기반이 되는 법률 차원에서 이들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명확히 하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다문화학생등’의 개념에 미등록 이주아동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② 이들이 국민과 같은 수준의 초·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입학, 전학 등에 있어 필요한

육장 또는 중학구에 있는 **중학교**의 장에게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아동 또는 학생

2. 그 밖에 중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에 따른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교육장 또는 중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교육장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아동이나 학생이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따른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 7. 14.>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조치를 하도록 하며, ③ 학습과정, 복지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헌법 제31조제1항6)에 따른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 외국인이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논란이 있으나, 평등권의 관점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미등록 이주아동에게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⁷⁾.

개정안에 따르면 「UN아동권리협약」 이행의 일환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법 체계를 정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교육 혜택에서 소외되어온 미등록 이주아동의 초·중등교육 입학 및 진학을 법적으로 보장하여 사회통합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도 국내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본인의 선택이 아닌 부모에 의해 한국에 살게된 점, 한국의 공교육을 이수하며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 점, 본국의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고 본국에 어떠한 유대관계도 없어 본국으로 가게 되면 적응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에 국내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 보장을 위한 정책권고를 하였던 사실⁸⁾ 등 이들에 대한 보호조치의 필요성이 인정

6) 「대한민국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7) 이준일, 「미등록 이주 아동의 인권」, 『인권법평론 제28호』, 2022, 216~217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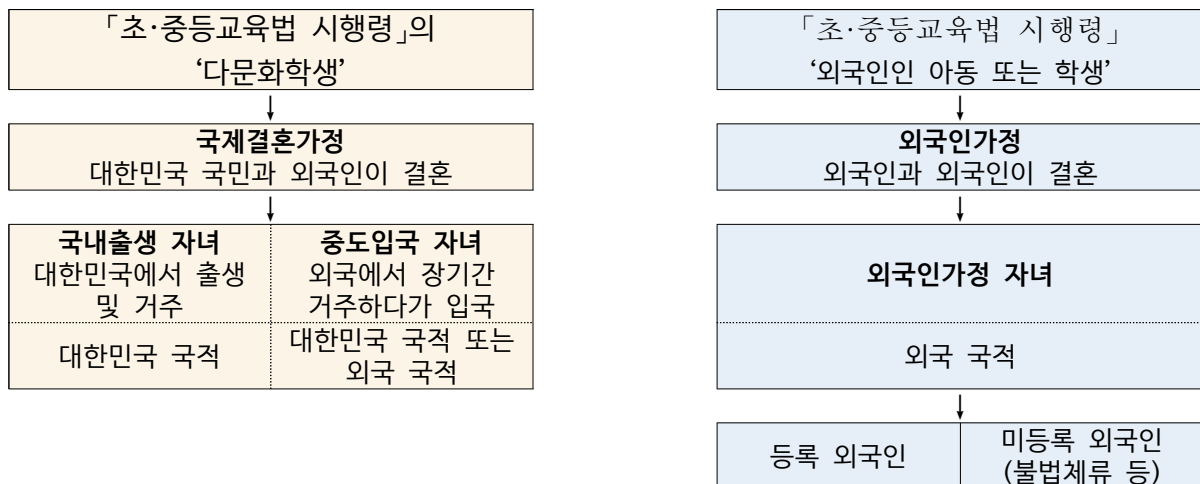
8)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미등록의 책임 없는 이주아동의 구제대책 지속되어야」, 2025

되는 측면이 있음.

다만, 현행법 규정에 따르더라도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치의무가 도출될 수 있으므로 입법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음.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제1항⁹⁾은 “다문화학생등”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인면서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아동 또는 학생’을 이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는바, 미등록 이주아동은 이에 포함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다문화학생등”의 유형 >



자료: 교육부

9)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다문화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아동 또는 학생(이하 “다문화학생등”이라 한다)의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해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또는 학생

개정안에 대하여 교육부는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는 동의함.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23.10.24. 신설)에서는 다문화학생등의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해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항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학생등에 미등록 이주아동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미등록 이주아동이 초·중등교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학습권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어 동 법률 개정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184

2.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면서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아동 또는 학생